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20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2년 11월 3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2022년 11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가. 제안이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놀이와 다양한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 및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놀이터의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3조 ~ 제5조)
- 놀이터 운영 규정(안 제6조 ~ 제13조)
- 놀이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20조)청년농업인의 나이를 현행 45세에서 49세로 상향 조정(제2조)

- 지원사업에 컴퓨터 및 전산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사업 추가(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영옥)

- 본 조례안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실내에서 놀이와 다양한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놀이공
간을 제공하고자 목적이 있습니다.

-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놀이터의 기능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놀이터의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 등
운영에 관하여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 자녀 돌봄 기능을 보완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인 만큼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모색 등으로 아이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 제공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보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것

제3조(명칭 및 위치) 놀이터의 명칭 및 위치는 군수가 고시한다.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인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제공
3. 보호자와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 제공
4. 놀이를 통하여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5.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 및 편의시설 제공. 다만, 놀이터의 특성 및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적절히 제공할 수 있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5조(의견수렴) 군수는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창군에 주소를 둔 어린이와 그 보호자
2. 평창군에 소재한 어린이 보육 및 교육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소속된 성인 인솔자
3. 그 밖에 대상자는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1일)
3. 추석(음력 8월15일)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의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8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소란·폭력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는 놀이기구 및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군수는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점검과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 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 점검 및 관리

3.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놀이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이하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조직, 시설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제16조(협약체결) 군수는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및 조건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놀이터 이용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놀이터를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군수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 협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협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지원) 군수는 놀이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 수탁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